제367회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3월13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 4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4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4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강창일・김병기・김성수・김영진・김현권・노웅래・박남춘・소병훈・손금주・심재권・원혜영・정춘숙 의원 발의) ····· 5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 ····· 5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백혜련・김영진・윤후덕・송기헌・박주민・김경협・정춘숙・최재성・제윤경 의원 발의) ····· 5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김성원・이은권・강석호・이채익・윤한홍・김종석・윤종필・김정재・신보라 의원 발의) ····· 5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추경호・김승희・정진석・박맹우・윤영석・김영우・윤한홍・박인숙・김기선・김광림 의원 발의) ····· 5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지상욱・금태섭・임재훈・이동섭・

정태옥・김상훈・정동영・박덕흠・박주민・최도자 의원 발의) ····· 5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권칠승・안호영・전현희・정재호・조승래・이수혁・이훈・송옥주・김병기・최인호・김영호・송갑석・위성곤・강병원・김한정・심재권・노웅래 의원 발의) ····· 5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 ····· 5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제윤경・민병두・김민기・이규희・신창현・서삼석・김한정・김상희・설훈・서영교・김영주・최재성 의원 발의) ····· 5
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김민기・신창현・김상희・이규희・서삼석・제윤경・설훈・서영교・최재성・김한정・김영주・민병두 의원 발의) ····· 5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신상진・심재철・조경태・김광림・김승희・엄용수・김성원・정진석・이진복 의원 발의) ····· 5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박맹우・추경호・정갑윤・박명재・김무성・홍문종・이장우・윤상직・이양수 의원 발의) ····· 5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심상정・원혜영・유성엽・장정숙・정인화・주승용・최경환(평)・황주홍 의원 발의) ····· 6
1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최인호・전현희・이후삼・제윤경・윤일규・백재현・이원욱・이석현・윤후덕・김병욱・안규백・임종성・박홍근 의원 발의) ····· 6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계속) ····· 15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강창일・김병기・김성수・김영진・김현권・노웅래・박남춘・소병훈・손금주・심재권・원혜영・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15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15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백혜련・김영진・윤후덕・송기헌・박주민・김경협・정춘숙・최재성・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 15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김성원・이은권・강석호・이채익・윤한홍・김종석・윤종필・김정재・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15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추경호・김승희・정진석・박맹우・윤영석・김영우・윤한홍・박인숙・김기선・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 15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지상욱・금태섭・임재훈・이동섭・정태옥・김상훈・정동영・박덕흠・박주민・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15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권칠승・안호영・전현희・정재호・조승래・이수혁・이훈・송옥주・김병기・최인호・김영호・송갑석・위성곤・강병원・김한정・심재권・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15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 15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제윤경・민병두・김민기・이규희・신창현・서삼석・김한정・김상희・설훈・서영교・김영주・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 15
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김민기・신창현・김상희・이규희・서삼석・제윤경・설훈・서영교・최재성・김한정・김영주・민병두 의원 발의)(계속) ····· 15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신상진・심재철・조경태・김광림・김승희・엄용수・김성원・정진석・이진복 의원 발의)(계속) ····· 15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박맹우・추경호・정갑윤・박명재・김무성・홍문종・이장우・윤상직・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 15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심상정・원혜영・유성엽・장정숙・정인화・주승용・최경환(평)・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5
1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최인호・전현희・이후삼・제윤경・윤일규・백재현・이원욱・이석현・윤후덕・김병욱・안규백・임종성・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16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12월 1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석 달 만에 개의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많은 분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와 여당의 입장 위주로 결정되고 또 세부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이루어 이미 관련 업계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회 차원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는 3월 1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광위가 창설되었으며 그동안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광위를 통하여 지자체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광역버스의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등 광역교통체계의 혁신을 이루어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새로운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법률안 심사, 드론 및 자율자동차 관련 공청회, 그리고 2019년도 정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기간에 심도 깊은 심사와 논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를 잘 맞춰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지요.

○서형수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 출신 서형수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하고는 제가 전반기에 환노위 있을 때 물관리통합협의체 활동하면서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늦게 온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지요.

○송언석 위원 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언석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봉 입법심의관입니다.

오세일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명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15일 임명된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14일 임명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여 말레이시아 등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박선호 1차관과 김정렬 2차관이 대리 출석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을 일부 선임 및 개선하고, 오늘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한 다음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14시16분)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 요청에 따라 서형수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송언석 위원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주승용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윤호중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박홍근 위원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를 3월 25일 월요일 하루 실시하고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듣고 후보자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의 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시18분)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규정된 기간을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내일 이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로부터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 신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 참고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인 3월 20일 수요일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강창일·김병기·김성수·김영진·김현권·노웅래·박남춘·소병훈·손금주·심재권·원혜영·정춘숙 의원 발의)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백혜련·김영진·윤후덕·송기헌·박주민·김경협·정춘숙·최재성·제윤경 의원 발의)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김성원·이은권·강석호·이채익·윤한홍·김종석·윤종필·김정재·신보라 의원 발의)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추경호·김승희·정진석·박맹우·윤영석·김영우·윤한홍·박인숙·김기선·김광림 의원 발의)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지상욱·금태섭·임재훈·이동섭·정태옥·김상훈·정동영·박덕흠·박주민·최도자 의원 발의)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권칠승·안호영·전현희·정재호·조승래·이수혁·이훈·송옥주·김병기·최인호·김영호·송갑석·위성곤·강병원·김한정·심재권·노웅래 의원 발의)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제윤경·민병두·김민기·이규희·신창현·서삼석·김한정·김상희·설훈·서영교·김영주·최재성 의원 발의)

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김민기·신창현·김상희·이규희·서삼석·제윤경·설훈·서영교·최재성·김한정·김영주·민병두 의원 발의)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신상진·심재철·조경태·김광림·김승희·엄용수·김성원·정진석·이진복 의원 발의)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박맹우·추경

호・정갑윤・박명재・김무성・홍문종・이장우・윤상직・이양수 의원 발의)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심상정・원혜영・유성엽・장정숙・정인화・주승용・최경환(평)・황주홍 의원 발의)

1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최인호・전현희・이후삼・제윤경・윤일규・백재현・이원욱・이석현・윤후덕・김병욱・안규백・임종성・박홍근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총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 분야 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민경욱 의원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점검 결과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전에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보 유출 시 시장 혼란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은 형벌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비 내역 등 공동주택 관리 주요 사항의 게시판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윤관석 의원안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 요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절차・현황・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순자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 분야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액관리제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택시에 대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또는 이에 준하는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근로시간 산정방법, 인정 범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의 카풀 출퇴근 시간 설정 등 택시・카풀 상생 합의 내용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

해 말씀을 드리면 이현재 의원안은 결함 조사 시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일한 취지의 다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결함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진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와 해외사업 경험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면허 심의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면허 기준 중 자본금 하한을 완화하는 것과 운수권의 우선 배분에 관한 내용은 항공안전 및 항공운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의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순자 박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4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정부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따가 별도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참고자료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 국토부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또는 위법성 같은 것을 검토한 게 있는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자료요청 말고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것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한 게 있는지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관련되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금 있었습니다만, 이게 작년 11월 26일 날 상정되었다가 남북경협 관련 법안으로서 수용불가 이게 2개가 결정이 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남북경협을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국토부에서 좀 준비한 게 있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운송사업법 법률안 박홍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월급제 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이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대개 지금 현재 택시회사별로 평균 수입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카풀이 지금 합의됐다고 해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또 개인택시는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그러는데 그 내용과 또 개인택시가 주장하는 내용 거기의 타당성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김정렬 차관님, 올해 이천-문경선 3400억 건설비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남부내륙선, 중부내륙선 이번에 예타 제외 사업으로 남북축의 조속한 건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광주-수서 구간 그 부분이 사실은 중부내륙선 그리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그다음에 앞으로 국토부는 거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자료 좀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송석준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현재 위원님하고 비슷한 자료인데요. 이번에 택시업계하고 합의된 카풀 관련된 국토부의 입장,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재 위원 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현재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요.

먼저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2차관님, 중부내륙철도 지금 김천에서 거제인가요? 통영까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통영.

○박덕흠 위원 통영까지 지금 예타 면제가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지금 김천에서 문경까지는 그러면 안 들어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타 면제는 아닙니다마는 같이 사업적정성 예타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런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문경에서 김천까지 예타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그렇지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김천-통영만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김천에서 문경까지의 사업 추진 시기라든가 연결성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타 면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마는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타가 어느 정도 적정성이 나올지는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박덕흠 위원 그게 빠진 이유가 그러면 어떤 이유예요? 아예 문경에서 통영까지 갔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만 빠졌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나 시급성……

○박덕흠 위원 그것을 저한테 보고 좀 따로 해 주세요, 그 이유하고 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자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김정렬 차관님, 5호선 강일역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연내 완공이 된다고 죽 협의를 해 오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아마 내년 초로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현재 한창 건설 중인 5호선 또 9호선 이게 그동안 강동, 서울시 강일역 구간이 그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것은 광역교통위원회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위례-신사선 이런 문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강훈식 위원님 하시지요.

○李憲昇 위원 오늘 장관님은 안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 부산역 이런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이 오늘 고시가 났는데 마무리 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범천동 철도차량 정비창 이전에 관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보고서 있으면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중부내륙선 관련해서 김천에서부터 거제 구간인데, 그 시점이 아마 김천인데요. 그 시점 부분 관련해서 KTX 김천역인지 아니면 국철 김천역인지 그것 관련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우리 국토위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국토위 소관 기관들이 그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조사 진행된 사항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도로공사에서 커피업체 테쿰에 대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월 달에 부산에 가셔 가지고 이미 2016년도에 다 일단락이 된 문제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해서 또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김해공항에서 미국과 유럽 직항노선 신설 문제를 우리 국토위에 소속된 의원님들도 다수 포함된 52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장관에게 빨리 그것을 해결하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또 포항공항의 명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민경욱 위원 지금 SOC 사업 가운데 몇 개가 예타 면제됐습니다. 저희 지역의 큰 현안인 GTX B 노선도 예타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님도 찾아가고 다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 서명까지 받았어요. 서명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GTX B 노선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하는 것은 여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이 'GTX 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기할 테니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 냈다'라고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러니까 GTX B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고요.

다음에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노선과 C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됐던 기간, 그다음 이번에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전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타 면제가 새만금공항하고 상용차 관련해서 예타 면제가 됐는데요. 전북에서는 새만금공항이 예타 면제가 됐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공항의 추진 계획을 주시고요. 또 연별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자료제출입니까?

○강훈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다음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차관님이 두 분이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결정된 것 중에 SOC 사업들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송언석 위원 몇 건쯤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국토부 소관이 15건입니다.

○송언석 위원 그 사업들의 대략적인 연차별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든 철도든 공항이든 간에, 대략적으로?

지금 예타가 면제됐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송언석 위원 투입이 되면 첫해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대략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그것 공사하는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기재부하고 협의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스케줄하고 거기에 따른 연차별 예산소요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윤영일 위원 방금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 그 투자 추진 스케줄하고 재원소요 플랜을 저한테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 운수법과 택시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말씀을 주셨고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적 이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2개 법안이 향후 심사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나 언론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타협에 대한 뒷받침을 우리 국회가 대원칙을 잘 지켜 나가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마감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것과—이때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거지요—그리고 택시 운전기사 사납금제 폐지하고 월급제 시행하는 것, 그다음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에 출시하는 것, 이런 게 주요 내용인데 평일 날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자는 것은 여당 의원들이 낸 또는 정부의 의견이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을 저희가 반영한 것은 잘 아실 테고.

더구나 현재 유사한 카풀이 실시되는 게 출퇴근 시를 명료하게 정리 안 해서 발생한 거라고 해서…… 이 법안은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동안 그것을 근거로 허용됐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심사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택시업계는 생업의 공유를 허용한 것이고 카풀업계는 플랫폼 기술 제공하고 제한 운영으로 한발씩 서로 물러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이 첨예한 갈등 사안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선례를 보여 줬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화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시행 문제는 2014년도에 서울법인 택시 운전자가 사납금 못 채워서 유서 남기고 자살한 사건 잘 아실 테고요. 당시에 여당도 사납금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8년도에—작년 12월이지요—극단적인 선택을 법인 택시 기사가 했고, 그리고 510일간의 세계 최장이라고 하는 서글픈 고공농성을 한 전주 택시 기사도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시행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바로 이 사납금 제도인 만큼, 평균 이직률이 매년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하는 문제와 완전 월급제 시행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꺼번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자 예.

○박홍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향후에, 정말 승차 공유 서비스하고 사납금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차에다 수레바퀴를 끼워 놓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국회가 대타협의 결실을 잘 맺어 줄 것을 여당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정부도 법안 심사 때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박선호 차관님, 공항공사 사장이 새로 임명되셨는데 그동안 낙하산 인사에 의해서 문제가 많았고 중간에 또 퇴직한 분도 계신데요. 공항공사 손창완 사장께서는 아마 정당 활동을 하다 오셔서 내년 총선에 안 나가시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 임명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

○이현재 위원 본인이 자신 없으면……

손창완 사장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박순자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이현재 위원 그간 낙하산 인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손창완 사장께서는 지난번에도 총선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맞습니다.

○이현재 위원 또 내년이면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경력 쌓기로 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내년 총선에 안 나가는 것을 전제로 공항공사

사장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분명히 해 주세요. 내년에 나갈 거면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면……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우선 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안 나가고 업무에 계속 전념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전념할 겁니다.

○이현재 위원 안 나가고 전념하는 겁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우선 제 생각은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임무에 전념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안 나간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우선 당장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이현재 위원 당장이 어디 있어요? 사장께서 공사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되지 당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공항공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중요한데 그것을 그렇게 사장께서 애매하게 당장은 그렇다는 게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는 말씀이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마할 의사가 없지만……

○이현재 위원 지금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우선 나갈 생각은 없고 이 직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당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지금 위원장직은 내려놓았습니다.

○이현재 위원 당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당원입니다.

○이현재 위원 당원 해도 공직에는 문제없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현재 위원 박선호 차관님, 문제가 없어요?

○咸珍圭 위원 뒤에 빨리빨리 답변해 줘요, 모르면.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공기업의 임원에 있어서 당적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박선호 차관님, 국토부에서 임명했으니까 그런 것 다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관계를……

○이현재 위원 차관님, 지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차관이 인사 주무 차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예, 맞습니다.

○이현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런 걸 임명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지 임명하고 나서 알아보겠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낙하산 인사고, 국민이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께서도 내년 총선에 나갈 건지 분명히 하세요. 그렇게 애매하게 '당장은'이라는 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선호 차관께서 공식으로 문서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이 문제는 좀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각 교체가 있었을 때 내년에 출마할 장관들은 지금 거꾸로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그렇기 때문에

행여 행정부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손……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손창완입니다.

○이용호 위원 사장님이 내년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는 게 좋고요.

또 우리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공기업의 장들은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들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차관?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

○이용호 위원 내년 총선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답변이 전념이지 매일, 주말에 지역 갈 것 아니에요? 이래서 공기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혼신의 힘을 다 해도 요즘에 공기업이 제대로 안 되는 판인데.

그래서 국토부가 공기업은 적어도 출마할 사람들은 언제까지 정리한다 이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오는데?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라는 부분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로 '장관들은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데 공기업의 장이 갈 때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국토부의 입장을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예.

○이용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 공기업의 장으로서나 혹여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출마하더라도 적어도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뭐가 어떻다고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지금……

○이용호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잘못됐습니다, 많이.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부를, 이 자리에서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지 된다라고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현재로서는 제가 이 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것 물에 물 탄 듯한 얘기이고.

가부간에 출마하시면 앞으로 길어야 1년도 안 되는데 이제…… 1년이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거쳐 가는 자리가 되면 그 중차대한 국제공항공사 임원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데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라고 묻는 겁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또……

○咸珍圭 위원 연관되어서……

○위원장 박순자 박덕흠 위원님도 계시고 함진규 위원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사항 같으면 박덕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덕흠 위원 손창완 사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적은 확실히 갖고 계신 거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당적만 갖고 그냥 당원으로만 있는 건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당원으로만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뭐 다른 직책 맡으신 건 없고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없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충실하겠다' '전념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 얘기랑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제가 여기 올 때는 여기에 전념하고자 하는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덕흠 위원 아니, 물론 정치를 하시다 왔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하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기간이 짧고 또 낙하산 인사 문제로 인해서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낙하산 인사로서 같이 비전문성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해서 다음 출마를 안 하고 나는 이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겠다' '전념하겠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국회를 좀 우롱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가면 나간다고 하세요. 어차피 임명됐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딱 솔직하게 '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세요, 남자답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직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만 1년 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 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출마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 직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咸珍圭 위원 잠깐 주세요.

○위원장 박순자 함진규 위원님, 같은 사안이면 종결을 좀 하도록 하지요?

○咸珍圭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함진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咸珍圭 위원 정식 임명을 받으신 건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咸珍圭 위원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여기 지금 여당 위원들도 다 계세요. 아마 여당 위원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 당이나 어느 당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천공항도 숱하게 봐 왔고.

사장님,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점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로 파악하고 계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공항……

○咸珍圭 위원 김포공항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14개입니다.

○咸珍圭 위원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 다 관리하지요? 몇 개입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14개 공항입니다.

○咸珍圭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치권에 있는, 뭐 전·현직 의원이 됐든 정당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준공직에 들어가면 그것 다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것 명확히 하셔야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저는 지금 이 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모호한 답변을…… 공항공사가 자그마한 조직입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항공사고라도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부나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백보 양보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요새 비행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전문성이 있으신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저는 그래도 평생 안전에 관련해서 근무를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저는 어느 당 소속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준공직 이런 막대한 임무를,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당활동을 잠시 접어놓는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을 해도 정당활동하다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지금 본사에는 이천백삼십몇 명입니다.

○咸珍圭 위원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정당활동을 하시면서 그걸 할 건지 아니면

엄청난…… 14개 공항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벅차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공항 사장님 여기 오셨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예.

○咸珍圭 위원 정당 당적 갖고 있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최근에 당적은 갖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당적은 갖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예.

○咸珍圭 위원 활동을 하시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안 합니다.

○咸珍圭 위원 지금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위원님들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내년 출마 생각 있는 사람이 출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자기 자유지요. 다만 이런 막대한 중책을…… 여기 한국공항공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것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알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출마하면 '출마하겠다' 안 하면 '안 하고 나는 정리를 하겠다'. 이게 뭐 6개월짜리, 8개월짜리……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공항 사장님들 정일영 사장 말고 전임들도. 로테이션으로 회전인사마냥 도는 데입니까? 저희 당도 반성해요.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아세요?

명확히 여기서 말씀하세요, 나갈 건지 말 건지.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지금 당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체의 당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 공직이 그런 공직이 아니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여하튼 임기를 다 채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3년입니다.

○咸珍圭 위원 그러면 출마를 안 하는 걸로 봐도 돼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그렇게 해석……

○咸珍圭 위원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예.

○위원장 박순자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윤영일 위원님, 같은 사안이면 좀 양해해 주시지요?

○윤영일 위원 아니요, 저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윤영일 위원님.

○윤영일 위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건데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이것은 노사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러면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부령으로 넘겨 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윤영일 위원 그래서 저는 대체토론을 하실 때나 나중에 소위나 이런 데서 이것을 검토하실 때도 실질적인 실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굉장히 정치한 방법으로 국토부는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성의 있게 제시를 해서 그 법이 그야말로 제대로 논의되고 검토된 방법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성의를 가져 줘야 된다. 그리고 법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도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참고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어디에서 얼마 시간을 대기하고 얼마 동안을 주행하고 어떻게 하루를 근무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이 다 도출 가능합니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일 위원 잠깐만요.

그런 경우도 실차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렇습니다.

○윤영일 위원 지금 운행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요금 미터기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커넥션을 이루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다 같이 수긍이 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

하다 이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지금 이미 활용 중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안 되고 있는 다른 시도에 이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만 남았는데……

○윤영일 위원 법률에서는 그걸 부령에 맡겨 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걸 좀 특정화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토론 중입니다마는 의결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계속)

(15시04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결했던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교섭단체로부터 위원 개선 요청이 있습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송언석 위원과 예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석준 위원을 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강창일·김병기·김성수·김영진·김현권·노웅래·박남춘·소병훈·손금주·심재권·원혜영·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백혜련·김영진·윤후덕·송기헌·박주민·김경협·정춘숙·최재성·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김성원·이은권·강석호·이채익·윤한홍·김종석·윤종필·김정재·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추경호·김승희·정진석·박맹우·윤영석·김영우·윤한홍·박인숙·김기선·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지상욱·금태섭·임재훈·이동섭·정태옥·김상훈·정동영·박덕흠·박주민·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권칠승·안호영·전현희·정재호·조승래·이수혁·이훈·송옥주·김병기·최인호·김영호·송갑석·위성곤·강병원·김한정·심재권·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제윤경·민병두·김민기·이규희·신창현·서삼석·김한정·김상희·설훈·서영교·김영주·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1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김민기·신창현·김상희·이규희·서삼석·제윤경·설훈·서영교·최재성·김한정·김영주·민병두 의원 발의)(계속)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신상진·심재철·조경태·김광림·김승희·엄용수·김성원·정진석·이진복 의원 발의)(계속)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태옥·박맹우·추경호·정갑윤·박명재·김무성·홍문종·이장우·윤상직·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심상정·원혜영·유성엽·장정숙·정인화·주

승용・최경환(평)・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1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최인호・전현희・이후삼・제윤경・윤일규・백재현・이원욱・이석현・윤후덕・김병욱・안규백・임종성・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박순자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차관님, 5호선 관련해서 말이지요 지난 연말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발표를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발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한 신도시는 예타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라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혹시 서로 같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런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안을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홍철호 위원 그것 언제까지 협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하여튼 저희는 빠른 속도로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도 아마 상반기 내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제 서울지하철은 엄밀하게 따지면 서울교통공사 거고 또 주인은 서울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김포선 같은 경우에 한강선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타 방법은 서울시 문제는 아니고요……

○홍철호 위원 아니, 예타는 이제 지나간 얘기이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실제 사업하는 문제는……

○홍철호 위원 예, 실제 사업할 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좀 더…… 광역철도를 또 넘겨 놨기 때문에.

○홍철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에서 철도도 좀 함께……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갖고 있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광역철도를 광역교통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업무분장 자체를.

○홍철호 위원 그러면 이제 한결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양자 간에 협의를 중재할 수 있고 또 조정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해도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렇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부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서울・경기・인천 부단체장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간 위원들이 또 이렇게 해서 당연히……

○홍철호 위원 차관님이 계시니까 또 그리고 황성규 국장도 계시니까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바뀌시고 하면 말이지요 나중에 또 '아이고, 그때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고 토가 달릴까 봐 그럽니다. 그건 서로 간에 명확하게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안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위원장 박순자 아, 그래요?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기왕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국회가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사실 국민들한테는 늘 미안합니다. 이렇게 현안으로 뜨겁게, 이게 첨예하게 부각이 되어야 나중에 국회가 따라가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법 가지고도 못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먼저 짧게 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요청을 드릴 텐데,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고 다중이용시설 중의 하나인 철도역사도 여기 대상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2차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는데, 현재

국가철도역사 651개 중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미세먼지 관리 대상 역사가 9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곳 중에서 현재 8개 역사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미세먼지 공기조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사각지대에 있는 게 예를 들어 연면적 20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제는 기준이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미세먼지관리 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오늘 기사가 많이 나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되던데 개발 단계에 있는 초미세먼지 제거 기술을 이 부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이게 환경부나 산자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국토부가 공사장이라든가 건설 현장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철도의 운행과 관련된 책임을 또 지고 있는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 데이터가 없고 2015년도 대기오염 기준 데이터가 있던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최신 자료를 준비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보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차량과 건설기계의 비산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꽤 높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6일 국토부가 제시한 긴급대책은 말 그대로 그냥 즉자적인 대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2017년도 9월에 세웠던데 저는 국토부가 과감하게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가령 영국이 2040년도에 경유·휘발유 차량 아예 판매 금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독일도 2030년부터 그러고, 프랑스 같은 경우 2040년, 인도 정부마저도 2030년도부터는 전기차만 팔게 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나 범부처 차원에서 이제는 과감하고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일정과 목표치를 제시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해 왔거든요. 오늘 마침 국회가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한 만큼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건설과 관련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설노동자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분들이 활동 차질을 빚을 경우에 소득 감소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엮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기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오늘 법안 대체토론 내용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카풀을 이슈로 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1월 22일 출범해서 많은 논의와 또 실무 워킹그룹을 운용했고 마침내 3월 7일 날 합의를 이끌어 내서 그 관련 합의 내용에 따른 법안을 저희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각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의 많은 논의로 서로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렬 차관님께서 그 진행 과정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서로 간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 정신에 맞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타협이 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합의가 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윤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합의 내용은 다 중요하다, 택시 업계의 숙원사업 관련한 법

개정도 그렇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모빌리티 업계라는 신산업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내에는 국민들의 요구도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똑같이 이번에 합의 정신에 맞게 법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또 정부 또 정치권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씩 양보를 하고 해서 잘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상당 부분들이 조각조각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합해서 일부는 수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번 3월 국회에 적어도 국토위라도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입니다.

○윤관석 위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서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른 만큼 이 내용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안 토론에 이 부분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조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차관님,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2차관님이 담당하시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2차관 소관입니다.

○咸珍圭 위원 이게 작년 11월 26일 날 국토 법안소위에서 다수 상정되었던 안건이거든요.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당시……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 불가되었고 또 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결렬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황 변동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수용 불가된 상황인데 또 올라와 있어서 이건 향후에 남북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활동하는 남북경협특위 이런 활동 상황을 보면서 인천국제공항 사업 범위에 넣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개와 관련되어서 카풀 제도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월급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 노사가 합의를 한 거니까 그건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택시 사측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좀 장기적으로 2,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월급제 시행 시기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하자 그런 측면으로……

○咸珍圭 위원 그러니까 이 월급제가 정부에서 결손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咸珍圭 위원 이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금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손이 생기는 것은 정부가 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월급제를 뭘 전제로 해서 도입을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咸珍圭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플랫폼 택시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고 규제 완화도 하고 택시산업의 틀 자체가 좀 더 개선이 되면 아마도 수요라든가 택시의 수입들이 상당히,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들의 일부 주장 내용인데요. 월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렵다고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러나 이 카풀의 시간제한 문제하고 월급제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기 때문에 카풀 시간제한만 통과를 하고 월급제는 아무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합의된 내용, 합의 정신에 맞춰서 제도화는 되되 어떤 시

행 시기라든가 구체적인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은 대령이나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든가 여러 가지 탄력적인 방법을 소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咸珍圭 위원 그런데 하는 사람도 없는데 시간 많이 좀 넣어 주세요.

○위원장 박순자 예, 말씀하세요.

○咸珍圭 위원 한 5분 넣어 주세요.

○위원장 박순자 예, 많이 하십시오.

○咸珍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카풀제도를 고육지책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봐요.

월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육지책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결손이 생길 경우에 택시업자한테 이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건지, 그런 것도 없고 무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모든 택시에서 의무적으로 장착된 운송기록장치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 형태나 성실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전액관리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운행기록장치가 교통안전법 55조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게 교통안전 및 이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활용 용도가 교통안전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운전종사자의 근로 형태나 성실성을 파악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담보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요. 이것을 가지고 근로 감독이나 급여 기준으로 삼는 데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안전성과 관련된 운행기록장치를 전액 운송수입금제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했냐 안 했냐 근로 감독하겠다는 거야, 이 자료를 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수입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하는 게 적법하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소정근로시간제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2시간밖에 안 되는 거고 서울시는 한 5.5시간,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정근로시간제에 입각한 현재의 사납금 제도의 폐해가 막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자 서비스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택시요금도 지난번에 18.8%가 이미 인상이 되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로 감당이 가능한 거고요.

○咸珍圭 위원 아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나한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운송기록장치를 관련 법률이나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게 이러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액관리제, 그러니까 운송수입 전액관리제로 보니까 감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통안전에 국한되어 있는 그 장치를 가지고 근로 감독 형태나 다른 것으로 성실하게 일하는지 보겠다는 게 맞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것을 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이게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제 지역 관련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2경인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우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차량 운행기록장치 같은 경우는 트럭 같은 것에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교통안전법에서 안전에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택시발전법에서 택시의 운행기록장치나 미터기를 활용해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법을 할 때, 교통안전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택시발전법에서 그것을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도록 정리를 하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택시 업계하고도 더 조율을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咸珍圭 위원 2009년도 9월……

○위원장 박순자 저기, 잠시……

김정렬 차관님, 자세한 내용을 함진규 위원님 방에 가셔서 말씀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별도로 갖다 드리세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咸珍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우물우물하게 내 방에 와서 나 설득하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박순자 아니, 그러면 함 위원님, 오늘 의결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咸珍圭 위원 끝낼게요.

○위원장 박순자 벌써 시간을 7분 쓰셨습니다.

○咸珍圭 위원 더 하실 분 있어요?

○위원장 박순자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09년도 9월 23일 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때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똑같은 주장이 됐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가려다 보니까 운전자의 사생활과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기통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못 했어요. 못 하고 지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허천 의원이 냈었다고, 이것을 참조해서 보시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오히려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증명해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통제하는 걸로 활용하는 게 아니지요.

○咸珍圭 위원 참나,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

○위원장 박순자 그러게 차관님께서 자세한 자료로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만 왔다갔다 질의시간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咸珍圭 위원 사생활 침해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마칠게요.

제2경인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철도 말이지요?

○咸珍圭 위원 그렇지요. 인천에서 가는 것 있잖아요, 시흥 거쳐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咸珍圭 위원 우리 시흥시에 지금 들어가는 부담액이 만약에 이것 할 경우에 1700억이 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면 적어도 시흥시의 지자체장이나 저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지 시흥시의 구간을 통과하는데……

제가 이 노선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토지보상비가 17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흥시 사람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없는 것을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말이야 기재부까지 예타에 사업 신청으로 들어가 있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래서 지금……

○咸珍圭 위원 그게 누가 추진한 거예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흥시 지자체가 1700억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데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그래서 시흥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에, 지금 인천지하철 2호선이 용역 중에 있어요, 그것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흥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단체장이 반발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협의를 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누가 추진하는지 공개하세요. 공개적으로 추진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실세라고 그래서 말이야 그냥 모든 절차 다 생략하고, 기존에 있는 노선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기존에 있는 노선과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것 나한테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위원장 박순자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규희 위원 제2차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쨌든 국민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을 저는 제시했다고 보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의 진정성도 많이 기여를 했고,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업계의 결단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택시 업계의 결단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기재부나 청와대 일부에서 이게 I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다 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진짜 국민을 갈등에 몰아넣고 하여튼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고유한 의미의 카풀이라는 어떤 공유경제, 그러니까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이런 순수한 의미의 카풀은 공유경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풀 앱의 플러스 같은 데서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희망을 했을 때 자가용을 배차하는 앱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풀 시스템과 우버 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버가 미국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콜밴이라는 제도가 처음에 카니발 팔아 주려고 해서 이상한 논리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콜밴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다시 존속을 하고 있는데 콜밴을 존속을 시키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예요. 우버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자가용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우버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서 실업자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 운영 전략을 이런 비정규직 수준의 적은 보수의 직업을 넓게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의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의 보수가 저축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본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 정책의 전략으로 맞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낙오되는 사람은 복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3만 불 올라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우버 택시, 그런 어떤 직업으로 100만 원도 못 버는 직업을 양산하는 이러한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면……

○위원장 박순자 그러십시오.

○이규희 위원 전액관리제를 찬성하는 기사도 있고 반대하는 기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글쎄, 저희가 통계까지는 아직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규희 위원 이게 전액관리제를 하느냐 사납금을 폐지하느냐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인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운임의 적정성 확보와 그리고 택시 감차를 성공적으로 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 수입이 기본적으로 300 안팎이 될 수 있도록 택시 산업 발전의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고요.

전액관리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액관리제 한다고 갑자기 택시 기사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회사와 택시 기사가 결국 어떻게 수입을 나눌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납금 문제는, 택시 문제는 우리나라 요금의 수준은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 개정 지정을 다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사납금 인상분—사납금이 사실 지옥의 수준인데—사납금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어차피 택시 회사도 살아야 되니까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택시 기사한테 계속 전가시키는 것이 가혹하다 하면 그 인상분에 한해서 계속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버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듯이 이런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택시를 일정 수입까지 좀 처우 개선을 해 줘야 그다음에 공유경제로서 카풀 영역을 더

넓히든지 시간대를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보다 또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의 발전적인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급제를 시행함을 통해서 사납금제 폐지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위원님의 주장이신데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방향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여러 가지 택시요금이라든가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택시의 사업 형태라든가 영업방식 또 고객에 대한 다양화, 새로운 시장을 자꾸 개발하고 창출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택시 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국민니즈(needs)에 맞게 개발해서 수입을 늘려서 이렇게 윈윈이 되어야지 그냥 종전과 비슷하게 하면서 정부가 재정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별로 발전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업계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택시요금의 적정한 인상과 적극적인 감차 정책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렬 예, 그것은 지금 여기서……

예.

○위원장 박순자 이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안 의결 및 국무위원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국토법안심사(10인)	강훈식 김철민 윤관석 이규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5)
	◎이헌승 박덕흠 이은권 함진규	자유한국당(4)
	이혜훈	바른미래당(1)
교통법안심사(10인)	◎윤관석 김영진 박재호 박홍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5)
	김상훈 민경욱 송석준 이현재	자유한국당(4)
	이용호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10인)	서형수 윤호중 이후삼 황 희	더불어민주당(4)
	김석기 박덕흠 송언석 홍철호	자유한국당(4)
	◎이혜훈	바른미래당(1)
	윤영일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10인)	서형수 이규희 이후삼 황 희	더불어민주당(4)
	◎홍철호 김석기 송석준 이은권	자유한국당(4)
	주승용	바른미래당(1)
	정동영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27인)

강훈식	김상훈	김석기	김영진
김철민	민경욱	박덕흠	박순자
박홍근	서형수	송석준	송언석
안호영	윤관석	윤영일	윤호중

이 규 희　　이 용 호　　이 은 권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정 동 영
함 진 규　　홍 철 호　　황　　희

○청가 위원(3인)

박 재 호　　임 종 성　　주 승 용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장　대　섭
전　문　위　원	박　희　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박　선　호
제 2 차 관	김　정　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　상　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　일　영
한국공항공사사장	손　창　완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 월 일
이학재	주승용	바른미래당	2018. 12. 18.
박완수	송언석	자유한국당	2019. 1. 11.
송언석	최경환	자유한국당	2019. 1. 22.
김정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2019. 1. 23.
최경환	송언석	자유한국당	2019. 2. 18.

○의안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김수민·이찬열·이동섭·김종회·김삼화·최도자·하태경·신용현·강길부·조경태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강석호·정유섭·임이자·이명수·주호영·정갑윤·박명재·추경호·곽대훈·원유철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정동영·김경진·김종회·노웅래·윤소하·이정미·이찬열·임재훈·장정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15건 12월 11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경진·윤종필·이찬열·김광수·유성엽·주승용·장정숙·조경태·장병완·금태섭·성일종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전혜숙·송기헌·권칠승·이종걸·오제세·이찬열·남인순·윤일규·김영진·김철민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손금주·서삼석·어기구·송갑석·권칠승·이규희·위성곤·정태옥·김종훈·김철민·박정·조배숙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신상진·유의동·문진국·김진태·김상훈·김도읍·윤종필·김경진·김규환·민경욱·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2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제윤경·민병두·김민기·이규희·신창현·서삼석·김한정·김상희·설훈·서영교·김영주·최재성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2. 박홍근·안호영·김현권·서형수·박재호·우원식·남인순·박주민·송갑석·이학영·송옥주·김민기·신창현·김상희·이규희·서삼석·제윤경·설훈·서영교·최재성·김한정·김영주·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곽상도·임이자·원유철·김정재·김규환·김성원·김재원·박명재·김영우·추경호·정태옥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윤영석·박성중·곽대훈·윤종필·박맹우·유기준·강길부·권성동·정갑윤·황주홍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김철민·이수혁·김현권·강훈식·윤관석·신창현·윤영일·박정·이찬열·황희·임종성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심기준·송기헌·우상호·신창현·김정우·박재호·노웅래·민병두·최재성·윤후덕·맹성규·박정·김병관·김철민·김한정·박광온·박완주·임종성·황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이규희·이후삼·윤후덕·황희·박완주·송영길·윤일규·강훈식·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4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김철민·전재수·김현권·위성곤·윤관석·윤영일·이개호·이수혁·강훈식·이찬열 의원 발의)

12월 17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조경태·정병국·김도읍·이찬열·황주홍·박완수·김재경·신보라·홍철호·이명수 의원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김철민·박정·이찬열·김영진·어기구·이수혁·윤영일·전재수·김현권·김민기·윤후덕·이석현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박재호·김해영·송기헌·최인호·전재수·임종성·박정·위성곤·윤준호·김병관·이찬열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조경태·민홍철·정병국·김도읍·이찬열·유기준·박완수·이상헌·김재경·신보라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7. 심재철·윤상직·김규환·金成泰·윤영석·박명재·박인숙·성일종·추경호·유민봉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8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심재권·임종성·전현희·권미혁·황희·박찬대·송영길·신창현·송옥주·송갑석·이수혁·유승희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8. 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9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장석춘·임이자·김도읍·이은권·이종배·최교일·윤상직·문진국·김규환·송언석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이현재·신상진·심재철·조경태·김광림·김승희·엄용수·김성원·정진석·이진복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김영진·윤관석·백혜련·인재근·이원욱·김병기·금태섭·안호영·이학영·김현권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장제원·윤상직·김세연·김선동·여상규·추경호·엄용수·김성찬·주호영·송희경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9. 이용호·윤소하·박찬대·김삼화·장병완·박지원·김두관·조배숙·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0일 회부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임종성·김철민·안호영·강훈식·윤관석·김영호·이규희·송석준·박재호·정춘숙 의원 발의)

12월 21일 회부됨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윤관석·금태섭·윤후덕·박찬대·박주민·이후삼·황희·이철희·안호영·소병훈·김정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정유섭·김성원·이은권·강석호·이채익·윤한홍·김종석·윤종필·김정재·신보라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이혜훈·지상욱·금태섭·임재훈·이동섭·정태옥·김상훈·정동영·박덕흠·박주민·최도자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홍익표·황희·이춘석·최인호·이재정·서영교·김민기·김경협·박광온·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4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병기·백혜련·김영진·윤후덕·송기헌·박주민·김경협·정춘숙·최재성·제윤경 의원 발의)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이은권·정진석·장석춘·김성찬·김정재·박덕흠·민경욱·김규환·김상훈·김태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6일 회부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7. 안호영·김현권·전현희·제윤경·강훈식·박재호·황희·김영진·이원욱·금태섭·윤일규·김병욱·최인호·이후삼·박홍근·윤후덕·김상희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27. 강훈식·김종회·정춘숙·윤일규·조승래·윤후덕·안호영·이규희·최인호·한정애·윤호중·김철민·임종성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7. 안호영·김현권·제윤경·강훈식·박재호·황희·김영진·이원욱·윤일규·김병욱·최인호·이후삼·박홍근·윤후덕·김상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7. 유동수·이찬열·박찬대·이동섭·정동영·신창현·서삼석·김철민·박정·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8일 회부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이후삼·안호영·기동민·고용진·이춘석·정세균·윤관석·이원욱·전현희·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박덕흠·김승희·경대수·신보라·김태흠·추경호·윤종필·홍문표·이은권·서청원·김현아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소병훈·안호영·임종성·이상헌·금태섭·강창일·원혜영·박주민·김영진·이석현·송석준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정재·추경호·곽대훈·주광덕·김석기·박대출·민경욱·김도읍·김성원·박덕흠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정재·추경호·곽대훈·주광덕·김석기·박대출·민경욱·김도읍·김성원·박덕흠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이후삼·안호영·기동민·고용진·이춘석·정세균·윤관석·이원욱·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재성·윤후덕·설훈·우원식·신창현·김병기·김한정·제윤경·권미혁·조승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정재·추경호·장석춘·곽대훈·주광덕·김석기·민경욱·김도읍·김성원·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31일 회부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이개호·안규백·홍문표·김영호·위성곤·오영훈·김철민·송석준·유동수·조정식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이개호·위성곤·정세균·어기구·김경진·송석준·김철민·송갑석·유동수·안규백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홍철호·이은재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홍철호·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4건 2019년 1월 2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송옥주·박찬대·백혜련·서형수·신경민·심재권·유승희·윤관석·윤후덕·이상헌·황주홍 의원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이헌승·박순자·김한표·민경욱·엄용수·김성원·김태흠·곽대훈·함진규·김석기·김기선·윤영석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송옥주·박찬대·백혜련·서형수·신경민·심재권·유승희·윤관석·윤후덕·이상헌·황주홍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정유섭·김성원·이은권·민경욱·강석호·이채익·김종석·김정재·신보라·이종명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정유섭·김성원·이은권·민경욱·강석호·이채익·김정재·신보라·주광덕·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3일 회부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이헌승·박순자·김한표·민경욱·엄용수·김태흠·김성원·곽대훈·함진규·김석기·김기선·윤영석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최연혜·김영우·이양수·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4일 회부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김재원·민경욱·윤상직·박덕흠·이명수·송언석·박맹우·김재경·정태옥·추경호 의원 발의)

1월 7일 회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 7. 김동철·최도자·정종섭·최운열·유승희·백재현·김경협·임재훈·민병두·정유섭·민경욱·김삼화·임종성·정성호·김관영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 7. 김관영·정병국·이동섭·김삼화·권은희·정운천·김수민·오신환·임재훈·채이배·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8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8. 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유민봉·박덕흠·홍철호·최연혜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8. 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유민봉·박덕흠·홍철호·최연혜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8. 민경욱·김성원·윤상현·주호영·유기준·이완영·정용기·엄용수·이헌승·김태흠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8. 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유민봉·박덕흠·홍철호·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9일 회부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 9. 제윤경·안호영·백혜련·표창원·박찬대·한정애·서형수·신창현·박주민·고용진 의원 발의)

1월 10일 회부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이해찬·윤일규·송옥주·신창현·김병기·백재현·송갑석·추미애·이상헌·윤관석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민경욱·박덕흠·신보라·김성원·윤상현·주호영·유기준·이완영·정용기·엄용수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김종민·윤준호·송기헌·금태섭·주승용·윤후덕·신창현·고용진·김해영·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4일 회부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백혜련·임종성·강창일·김병기·김영진·김영호·금태섭·제윤경·유동수·박완주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윤영일·김종회·이학영·윤호중·

이원욱・한정애・장병완・주승용・안민석・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6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6. 백승주・김광림・이정현・박명재・최교일・김승희・박덕흠・조경태・김영우・김규환 의원 발의)

1월 17일 회부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이학재・홍철호・박명재・김정재・김상훈・김삼화・박덕흠・추경호・조경태・박인숙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박덕흠・백승주・이종구・김용태・원유철・서청원・김정재・홍문표・추경호・조경태・경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8일 회부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이원욱・김영진・최재성・백혜련・김병관・원혜영・변재일・윤호중・강훈식・이학영 의원 발의)

1월 21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 21. 전해철・우원식・맹성규・유동수・박찬대・오영훈・신창현・이학영・황희・김정우 의원 발의)

1월 22일 회부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추경호・김용태・김광림・정진석・박덕흠・김선동・김상훈・곽상도・이학재・김정재・김도읍・이종배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임종성・안호영・이원욱・윤관석・전현희・윤후덕・김경협・정인화・조정식・노웅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임종성・안호영・이원욱・윤관석・전현희・윤후덕・김경협・정인화・조정식・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박재호・송기헌・김영진・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이찬열・이철희・김병기 의원 발의)

1월 25일 회부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김상훈・송언석・송석준・박덕흠・함진규・정태옥・김석기・김승희・추경호・곽대훈・이완영・윤영석 의원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박정・유동수・백혜련・최운열・송기헌・김성수・이훈・권칠승・이수혁・김철민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홍철호・김명연・박완수・박덕흠・유민봉・추경호・유의동・조훈현・윤영일・김현아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8일 회부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박경미・조승래・김영호・김민기・김병욱・이원욱・표창원・김종민・권칠승・안민석 의원 발의)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박경미・조승래・김영호・김민기・김병욱・이원욱・표창원・김종민・권칠승・안민석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금태섭・황주홍・윤영일・이철희・백혜련・김경진・전혜숙・최인호・표창원・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9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박대출・정유섭・김재원・김정재・이은권・홍철호・이채익・이종배・정갑윤・김재경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백승주·김성태·이채익·박인숙·송희경·장석춘·조경태·김규환·강석호·박덕흠·김정재·최교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0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김기선·원유철·곽대훈·박덕흠·성일종·김상훈·민경욱·경대수·김도읍·김태흠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경대수·황영철·김광림·김현아·성일종·이명수·김재원·박덕흠·민경욱·김영우·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1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김영진·안호영·이후삼·김병기·황희·박재호·전혜숙·이원욱·김병관·백혜련·금태섭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윤상현·이철규·김한표·백승주·박순자·장석춘·강석진·이양수·이은권·김성원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이헌승·정태옥·박맹우·추경호·정갑윤·박명재·김무성·홍문종·이장우·윤상직·이양수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이헌승·정태옥·박맹우·추경호·정갑윤·박명재·김무성·홍문종·이장우·윤상직·이양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금태섭·황주홍·윤영일·이철희·백혜련·전혜숙·최인호·이학영·윤후덕·이춘석·김영진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김한정·강창일·김경협·김민기·김병기·김영주·김영호·박완주·박정·박홍근·설훈·우원식·윤준호·이훈·최재성·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7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김석기·이철규·김승희·김성찬·정갑윤·윤종필·박인숙·정진석·이은권·송희경·추경호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윤관석·윤후덕·금태섭·이학영·김영진·송영길·강훈식·이원욱·박찬대·전현희·이재정·권칠승·안규백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신경민·최재성·이수혁·박정·신창현·추미애·표창원·이철희·금태섭·박주민·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1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이헌승·유재중·백승주·김학용·김기선·김선동·김세연·박대출·함진규·김상훈·이진복·최교일·이완영·유기준·원유철·김성찬·강효상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윤상직·곽대훈·金成泰·김순례·문진국·성일종·원유철·유민봉·이은권·추경호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정동영·금태섭·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찬열·임재훈·장정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정동영·김경진·김종회·박주현·유성엽·윤영일·이찬열·정인화·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2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이헌승·유재중·백승주·김학용·김기선·김선동·김세연·박대출·함진규·김상훈·이진복·최교일·이완영·유기준·원유철·김성찬·강효상 의원 발의)
2월 13일 회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김광수·황주홍·정동영·윤소하·박지원·김종민·이찬열·유성엽·김종회·장병완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강효상·곽대훈·윤종필·정태옥·이완영·엄용수·정유섭·김승희·김기선·김선동·최교일·김성찬·이헌승·정종섭 의원 발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강훈식·정춘숙·정세균·김영진·윤후덕·이원욱·안호영·임종성·한정애·윤일규·신창현·김종회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이춘석·김광수·김경협·백혜련·안호영·정세균·홍익표·박용진·이재정·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4일 회부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2. 15. 정부 제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김관영·이동섭·김수민·정병국·김삼화·최도자·유의동·박선숙·조배숙·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8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김광수·황주홍·정동영·윤소하·박지원·김종민·이찬열·유성엽·김종회·장병완 의원 발의)
2월 19일 회부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9. 박완수·정갑윤·추경호·주호영·김영우·엄용수·강길부·홍문표·조훈현·김승희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9. 박완수·이채익·성일종·이찬열·정갑윤·추경호·주호영·엄용수·강길부·홍문표·조훈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0일 회부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민홍철·고용진·이수혁·안규백·서형수·임재훈·주승용·김해영·전재수·김정호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이상헌·서형수·정세균·강길부·송기헌·김정호·신동근·박재호·이석현·윤관석·송옥주·최인호·이동섭·김영주·안규백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이헌승·박맹우·추경호·정갑윤·윤상직·유기준·김성찬·김한표·김광림·김정재·김성원·유재중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박완수·강석진·윤영석·김성찬·이주영·홍철호·박대출·박맹우·이학재·권성동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1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박재호·이상헌·심기준·김현권·금태섭·이철희·한정애·이용득·김영진·유승희·전재수·윤준호·김해영·민홍철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변재일·김병기·금태섭·박주민·이철희·이석현·정세균·전혜숙·김경협·송영길 의원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백혜련·표창원·한정애·이용득·정세균·신창현·김현권·정성호·박영선·조배숙·이학재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2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윤관석·김민기·정동영·김진표·유동수·금태섭·안호영·김철민·김종민·이후삼·신창현·윤준호·민홍철·전현희 의원 발의)

2월 25일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이종걸·김종민·이철희·황주홍·유승희·이상민·박홍근·이재정·서영교·전재수 의원 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이종걸·김종민·이철희·황주홍·유승희·이상민·박홍근·이재정·서영교·전재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임종성·김철민·안호영·박재호·황희·김영진·이원욱·강훈식·윤관석·박홍근·윤영일·이규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홍익표·황희·전재수·송갑석·이재정·최인호·서영교·이춘석·김경협·김민기 의원 발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홍익표·황희·전재수·송갑석·이재정·최인호·서영교·이춘석·김경협·김민기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홍익표·황희·전재수·송갑석·이재정·최인호·서영교·이춘석·김경협·김민기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이규희·신창현·윤일규·조승래·윤관석·박홍근·김상희·정춘숙·이후삼·송영길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김철민·이찬열·윤관석·김현권·이수혁·위성곤·이개호·윤영일·정인화·신창현·권칠승·전현희·박홍근 의원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김철민·이찬열·윤관석·김현권·이수혁·이개호·정인화·신창현·권칠승·윤영일·설훈·전현희·김정우·박홍근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김철민·이찬열·윤관석·김현권·이수혁·위성곤·이개호·신창현·윤영일·설훈·전현희·김정우·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27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강훈식·조정식·이용득·최인호·안호영·임종성·이규희·정춘숙·김영진·이원욱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이종걸·제윤경·전재수·신창현·박용진·유성엽·이규희·신동근·유승희·황주홍·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4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송옥주·이상헌·금태섭·유동수·신창현·이정미·황주홍·김철민·신경민·남인순·한정애·이인영·강창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김관영·이찬열·김삼화·이동섭·최도자·유의동·조배숙·김수민·박주선·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5일 회부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엄용수·정태옥·최연혜·김규환·김도읍·장석춘·박완수·김광림·조훈현·강석진·박덕흠·송석준·박명재 의원 발의)

3월 6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윤영일·이학영·정인화·장정숙·이종배·서삼석·이원욱·윤호중·정동영·안민석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안호영·윤후덕·윤일규·강훈식·제윤경·이용득·최인호·임종성·김현권·장정숙·김상희·이원욱·김영진·박홍근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안호영·윤후덕·윤일규·강훈식·제윤경·이용득·최인호·박정·김현권·장정숙·김상희·이원욱·박재호·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7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서형수·김현권·신동근·김해영·김상희·민홍철·이철희·이종걸·김병욱·조승래·권칠승 의원 발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혁신도시지정촉구결의안

(2019. 3. 7. 홍문표·박성중·유민봉·성일종·위성곤·박덕흠·김태흠·이은권·안상수·정용기·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강훈식·강병원·김민기·맹성규·신창현·안호영·우원식·윤관석·이규희·이원욱·정재호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송석준·김승희·김상훈·심재철·소병훈·엄용수·박덕흠·함진규·이은권·민경욱·이현재·유동수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임종성·김철민·김영진·송석준·소병훈·함진규·강훈식·안호영·신창현·이용득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호중·김현권·김철민·서영교·이원욱·강훈식·윤관석·송기헌·이학영·김병기·김해영·윤영일·이찬열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이현재·홍철호·김성원·윤종필·김영우·박순자·김광림·민경욱·주광덕·임이자·박덕흠·김선동·윤영석·함진규·송석준·이양수·원유철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8. 정부 제출)

이상 6건 3월 11일 회부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이용호·최도자·김동철·정성호·정인화·이춘석·정세균·김광수·정동영·정운천·전재수·오영훈·김영주·이상헌·안민석·김관영·이원욱·백재현·안규백·정춘숙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철민·전재수·이개호·박홍근·신동근·정인화·윤관석·신창현·윤영일·이찬열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17건 3월 12일 회부됨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요청안
(2019. 3. 12. 대통령 제출)
3월 13일 회부됨

○청원 회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상한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
(2019. 2. 21. 안근우 외 8인으로부터 홍철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5일 회부됨

○의안 철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1. 김병관·권칠승·박광온·윤호중·박재호·윤관석·민홍철·김영진·고용진·강창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1. 김병관·권칠승·박광온·윤호중·박재호·윤관석·민홍철·김영진·고용진·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2019년 1월 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2. 김철민·신창현·김현권·윤관석·전재수·위성곤·이개호·이수혁·윤영일·전현희·이찬열 의원 발의)
2019년 2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보고 제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2019년 2월 7일 정부 제출)